

부산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나5044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은주, 유지원

법무법인 (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이진호, 김성훈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종률

변 론 종 결 2021. 4. 21.

판 결 선 고 2021. 6. 2.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가합1615 판결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및 피고 B, C에 대하여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E에게, 피고 B은 674,035,176원,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C은 495,241,176원, 피고 D은 161,0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로비자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로비약정의 무효,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정산금 등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 취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화장품 대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 선택적 청구로 추가함과 함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및 선정자 E에게, 피고 B은 592,780,706원,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C은 413,096,706원, 피고 D은 161,0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 D, B에 대한 로비자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등은 원고의 남편인 선정자 E(이하 원고와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F’을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겠다는 피고 D, B의 말을 믿고, 부정한 청탁인 납품 로비자금 명목으로 선정자 E 명의 계좌에서 피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9. 7. 24.부터 2013. 2. 26.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161,050,000원을 이체하였다.

① 부정한 청탁인 납품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것은 공정한 경제거래행위를 해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② 원고로 하여금 납품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동기를 갖도록 하는 위 피고들의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위 피고들에게 위 금원 상당을 교부하였으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하거나, ③ 위 피고들이 대기업과의 납품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 등을 기망하여 납품 로비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하거나, ④ 위 피고들의 위 기망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지급한 161,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이 2009. 7. 24.부터 2013. 2. 26.까지 수차례에 걸쳐 선정자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161,05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D이 2013. 2.경 선정자 E가 운영하는 F을 'G'이라는 회사에 소개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7, 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원고 등로부터 납품 로비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이 위 피고들에게 납품 로비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 등이 금원 송금을 중단한 2013. 2. 26.과 피고 D이 원고 등에게 G을 소개하여 준 시기가 근접하기는 하나, 피고 D의 모(母)인 피고 B과 원고가 상당한 친분이 있는 지인이었음을 배경으로 원고가 이미 수년 전인 2009. 7. 24.부터 피고 D에게 상당한 금원을 계속하여 송금해 온 사정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이 원고 등로부터 납품 로비자금을 받은 대가로 원고 등에게 G을 소개하여 준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2) 원고 등이 선정자 E 명의로 피고 D에게 송금한 돈이 납품 로비자금 내지 납품처 소개비 및 수고비 명목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 등은 위 금원 송금 이후 수년 동안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7. 3. 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 D, B을 형사고소하였다.

3) 원고는 선정자 E와 H(F의 전무) 모르게 위 금원을 피고 D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납품 관련 사항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선정자 E와 H에게 납품 로비자금 지급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음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선정자 E가 운영하던 F은 2010년경부터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궁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원고 등이 확정되지도 않은 납품업체 소개를 위해 약 3년 7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161,050,000원을 이체한다는 것 또한 사회통념상 수금하기가 쉽지 않다.

4) 한편 위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D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피고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원고가 송금한 금액은 일정하지 않게 십만 원 단위까지 송금되었고 송금 시기도 매월 20일경으로 일정하였으며 송금 횟수도 1개월에 1회를 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 등은 약 3년 7개월 동안 매월 피고 D의 계좌로 납품 로비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 D에게 위 금원을 송금한 이유와 그 사용처에 대하여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D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신용카드 사용대금이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5) 원고는 '대규모 납품을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납품 로비자금 명목으로 원고 등을 기망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피고 D 명의 계좌로 합계 161,0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 D, B을 고소하였으나, 2017. 10. 27.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원고가 위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여 그에 따라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으나, 2019. 6. 1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다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등은 목돈을 위한 투자금 또는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05. 11. 11.부터 2016. 4. 3.까지 수차례에 걸쳐 선정자 E 명의 계좌에서 피고 B, C 명의 계좌로 합계 1,240,459,520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D 등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는데, 2009. 3. 15.부터 2015. 9. 11.까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카드대금의 합계는 195,242,794원이다. 또한 원고는 2005. 12. 23.부터 2015. 10. 15.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피고 B으로부터 합계 549,975,550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①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피고 B, C에게 지급한 1,240,459,520원에서 원고가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195,242,794원과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차용한 549,975,550원을 공제하고 남은 495,241,176원(= 1,240,459,520원 - 195,242,794원 - 549,975,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② 피고 B은 원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면서 그 이행을 명백히 거절하고 있어,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이행거절)을 이유로 투자금 지급 약정을 해제하므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부당이득반환1) 으로 위 투자금 495,241,1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1. 11.부터 2016. 3. 9.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선정자 E 명의 등의 계좌에서 피고 B, C 명의 등의 계좌로 합계 1,240,459,52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05. 12. 23.부터 2015. 10. 15.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 B, C 등 명의 계좌에서 선정자 E 명의 계좌로 합계 549,975,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7, 8호증, 을 제1, 3,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등이 피고 B, C에게 목돈을 위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차용원리금을 넘는 추가 변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목돈을 위한 투자금 지급 또는 추가 변제를 전제로 한 원고 등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원상회복 청구를 포함) 또는 정산금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빌려 수년 동안 이를 사용해왔으므로 원고가 그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년전 사용된 신용카드 내역에 대한 CCTV자료나 매출전표의 부재 등으로 인해 위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실제 사용주체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원고가 산정한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사용대금이 원고가 실제로 사용한 신용카드들의 사용내역과 사용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위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개연성도 상당하다.

2) 원고는 위 피고들로부터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합계 549,945,500원을 차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등이 2010. 4. 12.부터 2015. 3. 23.까지 6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 B이 2015. 11. 3.부터 2016. 4. 30.까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이자상환 및 카드대금을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에 원고는 조금만 기다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고 B에게 답신한 점, 위와 같은 원고의 태도는 위 차용증 및 문자메시지 작성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피고 B은 통상 선이자 월 2%를 공제한 후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B이 보낸 이자상환 독촉의 문자메시지 및 원고의 답신 내용은 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나아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B의 복잡한 금전거래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은 금융거래내역에서 드러나는 529,340,500원 외에도 원고에게 현금으로 금전을 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로 인해 원고 등은 피고 B에게 차용증 및 각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위 차용증 및 각서가 실제의 금전거래내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자를 정하여 위 차용금 549,945,500원을 차용하였고, 위 549,945,500원 이외에도 추가로 금전을 차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3) 선정자 E는 2015. 3. 23. 피고 B에게 ‘상기 금액을 미수 30억, 카드세금 8,800만 원. 상기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 및 서울에서 상환 되는대로 상환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 B, C은 위 2015. 3. 23.에 그 동안의 금전 거래를 정리한 후 최종적으로 미수 금액이 30억 원이라는 내용으로 위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와 위 피고들이 10여년의 장기간 동안 다양한 명목이 혼재되어 있는 금전거래를 지속하여 온 점과 원고가 작성해준 다른 차용증의 경우 ‘차용함’이라는 문구가 있는 반면 위 차용증의 경우 ‘차용함’ 대신 ‘미수 30억’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채무액을 2015. 3. 23.을 기준으로 30억 원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B의 요구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준 점, 단지 피고 B의 요구만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거액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정산 명목으로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2015. 3. 23. 이후 2016. 4. 3.까지 피고 B에게 송금한 금액은 16,850,837원에 불과하고, 이는 위 정산금액 30억 원과 원고가 위 2015. 3. 23. 이후 2015. 10. 15.까지 피고 B로부터 송금받은 3,250,000원을 합한 303,250,0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카드대금을 원고가 자인하는 금액인 195,242,794원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원고 등은 목돈을 위한 투자금으로 피고 B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 E가 운영하는 F은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궁박한 상황이었던 점, 원고도 피고 B로부터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빌려 수년 동안 사용해 오는 등 재정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의 위 주장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기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며느리 I로부터 아모레화장품을 구입하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4. 12. 28.부터 2015. 6. 30.까지 20회에 걸쳐 I로부터 4,14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였으나, 위 피고는 화장품을 원고에게 보내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 등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화장품 대금 4,14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선정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금강제화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해주면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12. 15.부터 2016. 1. 29.까지 금강제화 상품권 170장을 13,600,000원에 구입하여 위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피고는 위 상품권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 등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상품권 대금 1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화장품 대금 관련 부분

갑 제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이 원고로부터 H 명의 신용카드번호를 건네받아 2014. 12. 28.부터 2015. 6. 30.까지 20회에 걸쳐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144,000원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7, 8호증, 을 제6, 7,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화장품을 보내주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 B이 원고에게 화장품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B은 원고가 화장품을 사주겠다고 하여 위 화장품을 선물로 받았을 뿐 원고에게 화장품을 보내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당시 원고가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화장품을 선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 B도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금만 기다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답변하였던 정황을 볼 때, 원고는 피고 B에게 상당한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화장품이 피고 B에게 교부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화장품 판매자인 I에게化妆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신용카드 결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고 B에게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원고는 차용금 변제 지체와 관련하여 피고 B를 달래기 위해 위化粧품을 선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원고는 ‘피고 B이化粧품을 보내줄 의사 없이 원고를 속여化粧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144,000원 상당을 H 명의 농협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고 B을 고소하였으나, 2017. 10. 27. 부산지방법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위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으나, 2019. 6. 10. 부산지방법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다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 금강제화 상품권 대금 관련 부분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5. 12. 15.부터 2016. 1. 29.까지 원고로부터 금강제화 상품권 170장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7, 8호증, 을 제6,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강제화 상품권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상당한 액수에 해당하는 상품권 구매대금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이 원고 A에게 상품권 구매를 부탁한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가 당시 자신에게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안한 마음에 위 상품권을 선물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게 상당한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이자상환 및 카드대금 결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원고는 계속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답신을 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은 답신을 보내던 중 ‘상품권

50장 갖다 줄 것이니까 받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 B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상품권을 교부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위 피고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피고 B의 변제 독촉에 대한 임시방편인 선물 명목 또는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상품권을 위 피고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원고는 ‘피고 B이 상품권 구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 없이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13,600,000원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 170장을 구매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피고 B를 고소하였으나, 2017. 10. 27. 부산지방법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위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으나, 2019. 6. 10. 부산지방법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다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및 피고 B, C에 대하여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관, 판사 박운삼, 판사 임상민

선 정 자 명 단

1. A
2. E. 끝.

1) '원상회복'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